# 학생 지도교수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96조에 의거, 교수와 재학생 및 졸업생간의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재학생들의 학업방향 및 진로설정, 그리고 졸업생들의 추후지도에 도움을 주고, 또 학생활동 전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내실있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운영)** ① 신입생 지도는 각 학과(전공)별 소속교수 전원이 분담하여 1년간 지도한다.(개정 2020. 3. 16.)

② 재학생은 각 학과(전공)별 소속 교수가 분담하여 지도하되, 각 학과(전공)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분담한다.

③ 재학생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학생 졸업 시까지 연속적으로 지도한다.

④ 졸업생 지도는 각 학과(전공)별 소속교수 전원이 담당한다.

**제 3조 (배정)** ① 지도교수는 학부(과)장이 학과회의를 통해 배정하되 각 학부(과) 소속 전임교수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3. 16.)

② 학부(과)장은 지도교수가 퇴직 또는 장기간 공석 등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도교수의 배정을 학부(과)회의를 통해 정한다.(개정 2020. 3. 16.)

[제목개정 2020. 3. 16.]

**제 4조 (임무)** 지도교수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3. 16.)

1. 담당학생에 대하여 개별면담 또는 집단면담을 실시한다.
2.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하여 지도하되 특히 학사제도(전공 선택, 전공 및 소속변경, 복수전공, 학점관리, 수강신청 등)에 대하여 중점지도 한다.
3. 전공과 연계성을 가진 소집단 학술모임 등을 유도하여 학업의욕을 높이고 나아가서 진로계획에 도움을 준다.
4. 대학생활에 있어 특별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장기결석, 진로 및 심리위기, 학업저성취 등)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필요시 교내 관련 부서에 연계하여 지도한다.
5.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중인 학생이나, 기타 학생처장의 요청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실시한다.
6. 졸업생이 모교에 대한 애착과 재학생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 졸업 후 미 취업한 학생에 대해서도 취업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지도 및 관리를 한다.

**제 5조 (면담 지도)** 지도교수는 매 학기 3회 이상 개별 또는 집단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6.)

**제 6조 (학외 활동)** 담당 학생들이 연구활동, 과외활동, 수련회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소정양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생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 (업무 협의)** 지도교수의 임무 수행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과 협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0. 3. 16.)

1. 학생지도 관계로 학교 당국에 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
2. 분담학생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3. 학부(과) 내 집단 지도 및 안내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제 8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